##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99 발의연월일: 2022. 7. 18.

발 의 자:권명호·임이자·유상범

박대수 · 김용판 · 송언석

최영희 · 정우택 · 김희국

김선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·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·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 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 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 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이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임차·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·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

(주택의 리모델링 포함)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등). 법률 제 호

###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주택매수"를 "주택매수 등"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주택매수"를 "주택매수 등"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주택매수"를 "주택매수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주택매수"를 "주택매수 등"으로, "해당 주택 및 그 대지 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(垈)인 토지를 말한다]의 매수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주택소유자"를 "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전단 중 "주택매수"를 "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매수가액 산정기준"을 "매수가액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산정기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주택매수"를 한다.

1. 해당 주택 및 그 대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(垈)인 토지를 말한다]의 매수

2.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거상·경관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환경개선비용(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한다)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 <u>주택매수</u> 청구지역"이란 지	4 <u>주택매수 등</u>
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	
주거상 · 경관상의 영향을 받	
는 지역으로서, 그 범위는 다	
음과 같다. 이 경우 "주택"은	
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	
른 주택을 말한다.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2장 재산적 보상 및 <u>주택매수</u>	제2장 재산적 보상 및 <u>주택매수</u>
청구	<u>등</u> 청구
제5조( <u>주택매수</u> 의 청구) ① 주택	제5조( <u>주택매수 등</u> 의 청구) ①
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	
는 주택이 <u>주택매수</u> 청구지역	<u>주택매수 등</u>
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	
해당 주택 및 그 대지[「공간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
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	<u>제1호를 청</u>
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	구하려는 주택소유자
지목이 대(垈)인 토지를 말한	

다]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 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 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 여 정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위 한 매수 청구 범위, 대상 및 매 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해당 주택 및 그 대지[「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(垈)인 토지를 말한다]의 매수
- 2.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거상 • 경관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비용( 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 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한다)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 선비용-----

-----매수가액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산정

④ 주택매수의 청구에 대한 청 ④ <u>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</u>

구기간, 불복절차 및 그 밖의	<u>선비용</u>
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	
까지를 준용한다.	